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0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김선교·이헌승·정동만

김성원 · 김상훈 · 김예지

윤상현 • 박덕흠 • 구자근

김대식 · 최보윤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 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 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

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 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 제1항).
- 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 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 의4제1항).
- 라.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 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양도함	2029년 12월 31일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

② ~ ④ (생 략)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 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1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 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 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 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20

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u>29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u>202</u>
9년 12월 31일

- 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⑧ (생 략)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 략)

<u>.</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
	-
	-
	-
	-
	-
	-
	-
2029년 1	
 <u>2월 31일</u>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